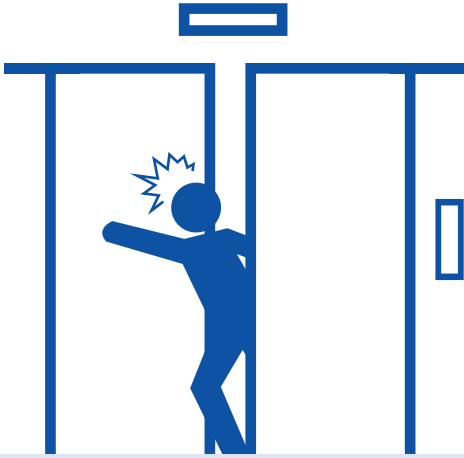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이렇게 가입하세요!



1.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elsa.or.kr)에 승강기 사고배상책임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등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및 약관은 보험사별로 상이하므로 보험료나 혜택 등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Q & A

Q 보험 가입은 누가 해야 하는지? 유지관리업체가 가입하면 안 되는지?

A 보험가입 의무는 승강기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 유지관리계약(종합유지관리계약 포함)을 맺어도 보험가입 의무는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Q 기존 영업배상책임 또는 시설물 보험 등은 인정인 안 되는지?

A 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법률상 책임에 대하여 보장하지 못하거나, 사고로 인한 보장범위(사고당 보상한도 제한 등)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다릅니다. 따라서 기존 보험과 별도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Q 보험 가입 사실 및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A 국가승강기정보센터(www.elevator.go.kr)에 접속 후 정보열람/승강기 정보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관련조문 및 내용요약
보험가입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가입 대상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모든 승강기 - 승객용,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등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가입대상이며, 검사연기(휴지), 불합격 승강기를 포함함
가입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	• 관리주체 - (가) 승강기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은 재유지관리, 자체점검 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보상한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사망 1인당 8천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원 등
가입사실 입력	• 입력 주체 : 책임보험 판매자 • 입력 사이트 : 승강기민원24 (https://minwon.koelsa.or.kr)
미가입 과태료	• 1차위반(100만원) / 2차위반(200만원) / 3차위반(400만원)

승강기민원24>고객센터>공지사항>상세보기

고객센터

공지사항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판매 현황

작성자	사이트관리 > 관리자	작성일시	2019.07.24 17:40:10
조회	76036	수정일시	2019.10.02 16:24:24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판매 현황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보험상품을 판매중인 아래 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판매현황(기준일 : 2019. 10. 02)

- 삼성화재 1588-5114
- DB손해보험 1588-0100
- KB손해보험 02-6900-5000(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전용 상담번호)
- 메리츠화재 1566-7711
-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 현대해상 1588-5656
- 롯데손해보험 1588-3344
- 한화손해보험 1566-8000
- 흥국화재 1688-1688
- MG손해보험 1588-5959
- AIG손해보험 1544-2792
-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1566-5800

* 상기 보험사는 출시일 순서에 따른 것이며, 공단에서는 특정 보험사를 추천하는 것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추후 판매회사가 추가 되는대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